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55027 판결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550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2239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B

변론 종결 2019. 5. 10.

판결 선고 2019. 6. 1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2239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 서울 성북구 E 도로 47m²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 17, 20,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담장, 담기둥 및 조경석 5.2m²,

나) 별지 도면 표시 11, 14, 13, 12,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② 부분 담장, 스텐파이프 난간 및

시멘콘크리트 포장 3.1m²,

다)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3, 1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③ 부분 담장 및 시멘콘크리트 포장 3.7m²,

라) 별지 도면 표시 15, 6, 3, 16,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담장 및 화단 0.2m²,

마) 별지 도면 표시 17, 11, 12, 20,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⑤ 부분 담장 및 철파이프 천막 추녀 0.8m²를 각 철거하고,

2) 위 1)항 기재 ①, ②, ③, ④, ⑤ 부분 각 토지를 각 인도하고,

3) 각 63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각 2018. 3. 5.부터 위 1), 2)항 기재 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월 13,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서울 성북구 E 도로 47m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원고의 피고(선정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의 1), 2), 3)항, 제1의 나.항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각 2018. 3. 5.부터 주문 제1의 가의 1), 2)항 기재 철거 및 토지인도 의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월 41,1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선정자들'로, 제4쪽 제20행의 '2017. 3. 6.'을 '2014. 3. 6.'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1987. 8. 29. 작성된 지적현황 측량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 벽돌담을 설치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부상준

판사박혜림

판사김세준

[별지](#)